

# 동서미술문화학회 윤리규정

2011년 7월 15일 제정

2019년 12월 1일(1차 개정)

제1조 (목적) :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투고자가 학회의 설립 목적을 위해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를 정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, 부정행위 발생 시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 (회원의 의무) : 본 학회의 회원과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윤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.

- (1)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삼가 해야 한다.
- (2) 학문적 양심과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.
- (3) 타인의 지적 재산을 표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(4) 학회 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.

제3조 (표절의 의미와 부정행위의 범위) : 본 학회는 표절의 의미와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- (1) 이미 발표되거나 출판된 원저자의 ‘참신한 연구 아이디어’, ‘연구물과 저작의 문구’, ‘제작된 자료수집 도구’, ‘분석된 데이터’, ‘고유한 연구결과’를 원 저자의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한 경우
- (2) 타인의 연구 및 사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
- (3) 타 학술지 및 저서에 게재된 내용을 약간의 문구만 바꾸어 투고하는 경우
- (4)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
- (5)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

제4조 (표절 및 부정행위의 제소 및 심의와 판정의 주체) : 본 학회는 표절 및 부정행위의 제소 및 심의와 판정의 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

- (1) 표절 및 부정행위의 제소는 학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에게 제소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육하(六何) 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(2) 표절 및 부정행위가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징계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다.

제5조 (윤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) : 연구윤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위원회를

설치, 운영한다.

- (1) 윤리위원회는 표절 및 부정행위의 제소가 접수될 경우, 학회장이나 편집위원장이 윤리위원 3인을 위촉하고, 학회장, 편집위원장, 제소판정위원(위촉받은 윤리위원) 3인, 총 5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3주 이내에 소집한다.
- (2) 표절 및 부정행위 제소자와 피의자는 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, 학회장 또는 편집 위원장 부재 시 윤리위원을 추가로 위촉한다.
- (3) 학회 총무이사는 윤리위원회의 간사직을 겸한다.

제6조 (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) :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, 의결 절차를 거친다.

- (1) 표절, 부정행위의 조사, 판정, 징계에 관하여 심의한다.
- (2) 제소자 보호 및 제소된 자의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하여 심의한다.
- (3) 제소된 안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(4)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(5) 심의는 제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, 심의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한다.
- (6) 제소된 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.

제7조 (제소한 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보장) :

- (1)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 당사자의 신원과 심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- (2) 제소된 자와 제소한 자에게 의견 진술 및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.
- (3) 의결이 완료된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(4)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제소된 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8조 (심의 및 의결 결과에 관한 보고서 작성) :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.

- (1) 제소내용
- (2)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
- (3) 심사 절차와 의결 결과

- (4) 의결 결과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의 인적 사항
- (5) 의결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 제기와 변론 내용, 그리고 그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

제9조 (표절 및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및 재심의) :

- (1) 윤리위원회는 제소한 자와 제소된 자에게 조사 내용과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- (2) 위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경중에 따라 '서면 경고', '2~5년간 투고금지', '게재취소', '제명'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이 사실을 한국연구재단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, 그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- (3) 제소한 자와 제소된 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- (4)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의결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.

제10조(연구자의 역할과 책임) :

- (1)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수해야 한다.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, 연구자의 성명, 소속, 직위(저자 정보)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한다.
- (2) 연구자는 단독저자, 주저자, 교신저자, 공동저자 등 참여 연구자를 모두를 포함한다.

제11조(학회의 역할과 책임) :

학회는 학술지 발간, 학술대회 개최,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,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,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윤리규정의 개정) :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, 상임이사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개정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효력발생) : 이 규정은 2011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효력발생) :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동서미술문화학회 학회지 편집 및 심사 규정

2011년 07월 15일 제정

2016년 01월 01일(1차 개정)

제1조(학회지의 명칭) : 학회지의 이름은 『미술문화연구』라 하고, 영문으로는 <The Journal of Art and Culture Studies>라 표기한다.

제2조(발간 횟수 및 발행시기) : 학회지는 매년 2회,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학회지의 내용구성) : 학회지는 학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며, 학회차원에서의 기획논문과 회원이 자유기고 한 일반논문 및 학술자료와 기타내용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편집위원회) :

- (1) 학회지의 편집과 논문심사 등 학회지 발간에 수반되는 제문제를 주관하는 기구로 편집위원회를 둔다.
- (2)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학문분야와 전문성을 감안하여 임기 2년으로 위촉하는 1~2인의 위원장과 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- (3) 편집위원회의 소집과 의사결정은 관례에 따른다.

제5조(회원의 기고권리) :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기고할 수 있으며, 학회지에 기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원고작성요령에 맞추어 작성·제출되어야 한다.

제6조 (논문심사) :

- (1) 학회지 게재용으로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표절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절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, 표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논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- (2) 학회지 게재용으로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관련분야 전문학자 3인을 지명하여 심사하게 한다.
- (3)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 위촉은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.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와 동의를 거쳐 추진한다.
- (4) 수합된 심사결과가

- ① 심사위원 2인 이상이 '가'로 평가한 논문은 게재하고,
  - ② 2인 이상이 '불가'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,
  - ③ '가'와 '수정'이 1명씩 나오거나 '수정'이 2명 이상 있는 경우는 수정 후 게재하고,
  - ④ 기타 경우의 처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(5)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필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수정 제출된 논문의 수정사항을 검사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하고, 필요시에는 제3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 (심사기준과 절차) : 논문심사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.

제8조 (제작비분담 등) : 학회는 논문기고자에게 심사비와 인쇄비 같은 제작경비에 대한 분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이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 (원고량 등) :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 200매 이하로 제한하며, 15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제작비의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. 초록은 학회지 1쪽 분량으로 제한하며 가능한 쉽게 작성하도록 권고한다.

제10조(기록보관 및 관리) : 논문의 접수—처리사항과 편집위원회의 결정내용은 편집위원장의 주관하에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, 편집위원장은 그 내용을 회장에 보고해야 한다.

제11조(논문심사) :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의 투명성을 위하여 투고일자, 심사완료일자, 게재확정일자 등을 명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제12조(저작권) :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로 이양된다.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투고자에게 공지하고, 저작권 이양에 관한 서명 동의를 요청, 확인하도록 한다.

## 부칙

제1조(효력발생) : 이 규정은 2011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효력발생) :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『미술문화연구』 논문 작성 및 제출 요령

본 학회의 『미술문화연구』에 논문을 기고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원고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하도록 한다.

### 1. 원고량

- 가.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며 한다. 도판을 포함하여 150매를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(원고량 체크는 한글 프로그램 ‘파일-문서정보-문서분량-원고지’활용).
- 나. 도판은 20매를 상한으로 하며 도판의 세로길이 1cm는 글자 70자로 계산한다.

### 2. 논문구성

- 가. 논문 구성은 제목, 필자명(소속포함), 목차, 국문초록(200자 원고지 3매 이내), 국문주제어(5개 이상), 본문, 참고문헌(인용한 것만 제시), 부록, 영문초록(영문제목과 영문 필자명 및 소속포함), 영문키워드(5개 내외) 순으로 배열한다.
- 나. 본문의 장, 절, 항, 목의 구분은 I → 1 → 1) → (1) → 가 순으로 한다.

### 3. 표기의 일반원칙

- 가. 논문은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전자메일로 제출한다.
- 나.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한자와 외국어로 된 용어, 인명, 지명 등은 한글로 적고 처음 나올 때에 한해 ( ) 안에 같이 적거나 필요한 경우에 각주에서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다. 외래어나 외국어는 표준적인 국문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.
- 라. 주요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.

서 명 : 『 』

논 문 : 「 」

작품명 : < >

#### 4. 도판 등의 표기법

- 가. 도판(그림이나 사진 등)은 포괄하여 일련번호를 매기되 '도 1'과 같은 형식으로 한다.
- 나. 도판의 일련번호 뒤에 붙이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도1. 작가, <작품명>, 제작년도 또는 시대, 재질 및 기법, 크기(세로×가로cm), 출처 혹은 소장처
- 다. 표, 도면, 지도 등도 일련번호를 매기되 각각 '표 1', '도면 1', '지도 1' 등으로 한다.
- 라. 표, 도면, 지도 등의 뒤에 붙이는 설명은 임의적으로 하되 통일된 형태로 한다.
- 마. 다른 문헌의 사진이나 표 등을 인용한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하며, 출처 표기는 도판 및 표의 설명 뒤에 괄호를 더하고 괄호 안에 밝혀둔다.

#### 5. 인용문 표기법

- 가. 인용문은 번역문을 실어야 하며, 필요한 원문은 주에 표기한다.
- 나. 인용문이 긴 경우에는 별도의 단락을 두어 표기하며, 이 경우 글자 크기를 1포인트 줄이고 인용문의 위아래 내용과 한 칸씩의 간격을 둔다.

#### 6. 주석 표기법

- 가. 주석은 각주의 형식으로 한다.
- 나. 한국 및 동양문헌
  - ① 저서 : 저자명, 『문헌명』, 발행지, 출판사명, 출판년도, 쪽수의 순서로 적는다(국내발 행지는 생략한다).
    - 홍길동, 『삼국지』, 한국출판사, 2011, 10-20쪽.
    - 이명성, 『당대묘실벽화연구』, 북경, 문물출판사, 2005, 10-20쪽.
  - ② 번역서 : 원저자명, 번역자명, 『문헌명』, 발행지, 출판사명, 출판년도, 쪽수의 순서로 적는다(국내 발행지는 생략한다).
    - 스미드 저, 홍길동 역, 『삼국지』, 미술출판사, 2011, 10-20쪽.
  - ③ 학술지논문 : 필자명, 「논문제목」, 『학술지명』 호수, 학술단체명, 출판년도, 쪽수의 순서로 적는다.
    - 홍길동, 「미술에 관한 연구」, 『미술문화연구』 93집, 동서미술문화학회, 2011, 10-20쪽.



- ④ 고전 : 『문헌명』 권수, 몇 년 몇 월로 적는다.  
『삼국사기』 1, 신라본기1, 박혁거세거서간 7년 7월 신축.
- ⑤ 학위논문 : 필자명, 『논문제목』, ○○대학교 ○○학위논문, 학위취득년도, 쪽수의 순서로 적는다.  
홍길동, 『안료에 관한 연구』,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, 2008, 10-20쪽.
- ⑥ 계속되는 인용  
홍길동, 앞의 책, 10쪽.  
위의 책, 10쪽.  
홍길동, 앞의 논문, 10쪽.  
위의 논문, 10쪽
- ⑦ 인용된 논문이나 문헌이 다수일 경우 : 각 논문 및 문헌 사이에 쌍반점(:)을 두어 구분한다.  
홍길동, 『안료에 관한 연구』,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, 2008; 이명성, 『당대 묘실벽화연구』, 북경, 문물출판사, 2005, 10-20쪽.
- ⑧ 내용과 함께 논문 및 문헌을 인용할 경우 : 내용 뒤에 괄호를 하고 괄호 안에 인용된 논문 및 문헌을 적는다.  
안료의 색은 흑, 백, 홍, 황, 녹, 청 등이다(홍길동, 『안료에 관한 연구』,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, 2008).

다. 서양서

- ① 저서 : 저자명, 책명(이태릭체), 발행지, 출판사명, 출판년도, 쪽수의 순서로 적는다.  
Ernst Gombrich, *Art and Illusion*, Princeton, Princeton University Press, 1969, pp.10-20.
- ② 저널 : 필자명, 논문제목, 저널명 및 볼륨(이태릭체) 호수, 출판년도, 쪽수의 순서로 적는다.  
Harskamp, Contemporaneity, Modernism, Avant-Garde, *British Journal of Aesthetics* 20, 1980, pp.10-20.
- ③ 학위논문 : 필자명, 논문제목(이태릭체), 대학교명, 학위명, 쪽수의 순서로 적는다.  
Ryerson, J. F, *Effective management trainging: Two models, Unpublished master's thesis*, Clarke College of Technology, Potsdam, NY.
- ④ 계속되는 인용

Ernst Gombrich, 앞의 책, pp.10-12.

위의 책, p.10.

Harskamp, 앞의 논문, p.10

위의 논문, p.10

Ibid, p.10

- 라. 신문 및 잡지기사: 필자명, 기사명, 신문명, 날짜,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.  
홍길동, 「문화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」, 『한국매일신문』, 2002. 6. 28, 5쪽.  
Gardner, H, Do babies sing a universal song, Psychology Today, 1981, September, pp.70-76.
- 마. 인터넷 자료: 필자명, 기사명, 해당 기관명(개인), 홈페이지 사이트명, 접속날짜 등의 순서 한다.  
홍길동, 「한국에 관하여」, 한국연구재단, www.nrf.re.kr, 2012. 5. 5.
- 바. 시청각 자료(영화, TV프로그램, 음반, CD-ROM 등): 프로듀서 및 감독명, 영화 및 프로그램명, 제작기관, 제작년도 등의 순서로 한다.  
홍길동, 「내고향 맛자랑」, KBS, 2012.

## 7. 참고문헌

- 가.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제시한다.
- 나. 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 “홍길동 외 2명”, “Kant et al” 등으로 표기한다.
- 다. 한글문헌, 동양어 문헌 (일본어, 중국어), 서양문헌 순으로 배열하되, 번역서는 번역어 문헌에 포함한다.
- 라. 한글·한자·일본어로 된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, 서양 문헌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.
- 마. 같은 저자의 문헌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한다.
- 바. 참고문헌을 나열할 때 각 문헌의 둘째 줄(行)부터는 3칸 들여쓰기를 하여 각 참고문헌 간의 구별을 쉽게 한다.

## 8. 기타 표기

- 가. 연구비 수혜 논문임을 밝히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 제목에 \*표시를 하고 각주 1)의 앞에 관련 내용을 표기한다.
- 나. 논문의 본문 중에 인용하는 저자 이름 밑에 붙이는 존칭은 생략한다.
- 다. 학술지나 저서의 권수, 호수, 통권수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.
- 라. 따옴표의 대화체나 문장일 경우는 “ ”, 단어, 구(句)는 ‘ ’(홀따옴표)로 통일한다.
- 마. 앞에 인용한 문헌의 반복을 표기할 때 구미문헌의 경우는 Ibid, op, cit를 사용할 수 있다.
- 바. 인용된 논문 및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 쌍반점(;)으로 구분한다.
- 사. 작가나 저자는 호가 아닌 정식 성명을 사용한다.
- 아. 도판이 문장에 들어갈 경우 “...도 1을 보면”, “...작품이다(도 1).”와 같이 표기한다.
- 자. 참고 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제시한다.